

연구관 직위의 종류[제25조의2 관련]

1. 부서의 장인 연구관

고도의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·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·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

2. 제1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

연구·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위

※ 비고 :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